



잘못된 친생자관계의 정정방법

최은순/변호사 www.womenlaw.co.kr

갑 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일군지는 25년이 넘었다. 겉보기에는 아들 둘을 낳고 비교적 순탄하게 산 것 같다. 그렇지만 그동안 갑돌이에 대하여 쌓이고 쌓인 앙금이 녹지 않는 갑순이. 갑순이의 무관심으로 서운한 감정이 쌓인 갑돌이. 갑순이가 갑돌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혼소송 제기를 위하여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본 갑순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돌의 혼인 전에 갑돌이는 이미 전혼경력이 있었는데 전처 소생의 어린 아들과 딸 하나를 이들 부부가 양육하여 독립시켰다. 그런데, 전처소생의 아들의 호적에 전처가 아니라 갑순이가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전처와 정식으로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터라 갑순이가 갑돌이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의 호적이 어머니를 전처로 하여 편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언제 어떤 경위로 갑순이가 전처 소생 아들의 어머니로 둔갑해버렸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갑순이는 남편인 갑돌이를 의심하지만 그냥 잘못된 호적만을 정정하고 싶을 따름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호적부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부(公簿)로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일단 친생자 관계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호적부의 기재 중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판결에 의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다.

갑순이 이외에도 법률상 아무런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예컨대, 부친관계에서 출생한 자식을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키면서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여 본처와의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아기를 어릴 때부터 데려다 기른 경우에 호적에 양자로 기재하지 않고 친생자로 입적시켜 두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 호적상의 부(父)나 모(母)는 그 친자 아닌 자(子)를 상대로 그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또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들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예컨대, 갑순이의 친자식)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호적상 친생자관계로 되어 있는 당사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이 소송은 특별히 정한 기한도 없다. 다만, 당사자 둘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한가지 있다.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적상의 부(父)나 모(母)가 입양의 의사가 있어 친생자로 등재한 경우에는 민법상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지 않는 한 호적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녀의 복리적인 측면을 배려한 것이다.

요컨대, 갑순이가 갑돌이의 전처 소생 아들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갑순이의 친자식이 나서서 갑순이와 자신의 배다른 형을 피고로 하여 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호적정정을 하면 된다. **PPFK**